



공증인가 동남합동법률사무소

THE DONGNAM LAW FIRM, Notaries & Attorneys-at-Law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5-1

홍우빌딩 7층

【별지 제33호서식】

대표전화 : 539-5011

F A X : 539-5010

등부 2019 년 제 2726 호

인 증 서

업 무 협 약 서

(주)누리펀딩대부 & (주)누리펀딩 (이하 "갑"이라 한다)와 김 [redacted] 이라
한다는 "을"에게 제공한 대출 등 금융관련 상품 (개별거래 또는 연소기대(기대)인) 에
관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 (이하 "본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아 래 -

제 1 조 (목적) 본 협약은 "갑"이 "을"에게 P2P 플랫폼을 통하여 취급하는 대출 등 금융관련 상품에
관하여 대출금의 지급 및 상환 등 쌍방의 업무 범위와 의무,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이라 함은 (주)누리펀딩에서 운영하는 P2P 플랫폼(Peer to Peer Platform)을 말한다.
2. "지정계좌"라 함은 "을"이 매출채권 상품판매대금(이하 "매출채권" 이라고 한다)을 지급 받기 위해
쇼핑몰 등 납품처에 통보하는 입금계좌를 말하며, 동시에 "갑"의 "플랫폼"에 등록된 "을"명의로 "나의
출금계좌"를 말한다.
(지정계좌: "을" 명의, 98977811 [redacted])
3. "쇼핑몰"이라 함은 "을"이 물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탁하는 소셜마켓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오픈마켓(옥션, G마켓, 11번가 등), 자사 쇼핑몰 등을 말한다.
4. "매출채권"이라 함은 "을"이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상품판매대금을 말한다

제 3 조 ("갑"의 업무 범위 및 의무) "갑"은 "을"에게 취급한 대출 등 금융상품에 대하여 "플랫폼"을
통하여 원리금의 상환과 "지정계좌"의 입출금에 대한 필요 정보를 "을"의 요청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하기로 한다.

제 4 조 ("을"의 업무 범위 및 의무)

1. "을"은 "갑"이 취급한 대출금에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양도한 "매출채권"의 입금계좌인 "지정계좌"를 "갑"과의 사전 동의 없이 "지정계좌"의 정보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대출금 상환과 관련된 입출금 업무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본건 대출거래를 위해, 1항의 지정계좌를 "을"이 거래하는 "쇼핑몰"의 "지정계좌"로 등록하여야 하며, 그 정보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나, 대출금이 "대부거래표준약관" 상 기한이의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로부터 양도받은 "쇼핑몰"의 "매출채권"을 "갑"이 직접 청구하여 물품대금을 수령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그 절차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5 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2019년 7월 23일부터 2020년 7월 22일(1년) 까지로 한다.
2. 제 1항의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갑"과 "을" 사이에 서면에 의한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때에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1년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 6 조 (협약의 해지)

본 "업무협약"의 해지를 원할 때는 "갑"이 취급한 "을" 명의의 대출금 등을 전액 상환하거나 상환받은 다음 상대방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해지 통지할 수 있다.

제 7 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본 협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신용정보 및 금융정보 관련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을"의 모든 정보를 "을"의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함부로 누설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

제 8 조(손해배상 등)

1. 어느 일방이 본 협약 내용을 위반함으로써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을"이 "갑"에게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양도한 "대출채권"의 입금계좌인 "지정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피담보채권 금액에 상당하는 금원은, 그 대출 원리금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는 "갑"에게 그 소유권(처분권)이 있음을 "을"은 인정하고, 만약 이를 위배할 때에는 횡령 또는 배임의 죄책을 진다.

제 9 조 (합의관할) 이 계약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에 대하여는 "갑"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이 업무협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증하기로 하며, 업무협약서 원본 2 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 날인하고 각각 1 통씩 보관한다.

2019년 7월 23일

(갑)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82 길 15, 10 층, 11 층

회 사 명 : (주)누리펀딩

(주)누리펀딩 대부

사내이사 : 김 정 권 (인)

사내이사 : 김 정 권 (인)

(을)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 [redacted] 101호

회 사 명 (개인) : 대표자 :

김 [redacted]

[별지 제35호의2서식]

공증인가 동남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19 년 제 2726 호

인 증

위 업 무 협 약 서 _____에 기재된

협약인(갑) 주식회사 누리편당 사내이사 김 정 권 _____

협약인(갑) 주식회사 누리편당대부 사내이사 김 정 권 _____

협약인(을) 김 _____

대리인 김 _____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사서증서에 기·서명날인이 각 그 본인들의 것임을 확인하였다.

본 공증인은 위 촉탁인 등의 대리인이 제시한 운전면허증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였다.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2019 년 07 월 23 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

공증인가 동남합동법률사무소 

소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7층 (대치동, 홍우빌딩)

공증담당변호사

진 깐

